갑오개혁 이후 조선 왕실의 의료 관제 연구

박훈평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의사학교실

A study of the medical officer system of the Joseon's royal family after the Gabo Reform

Hun-Pyeong Park

Dept. of Medical Classics & Medical History, College of Korean Medicine, Dong Shin University

The royal medical officer system of the Joseon after the Gabo Reform can be roughly divided into the period of the Taeuiwon, the Jeonuisa, the Naeuiwon, and the Sijongwon period. This study shows:

- 1. The status of the royal medical office was related to the status of the royal family.
- 2. After Jeonuisa, traditional royal offices of the Joseon Dynasty were not used.
- 3. 'Jeonui' became synonymous with bureaucrats in charge of royal medical care after the Taeuiwon period.
- 4. The Minister of Jeonui was the highest in medical bureaucracy since the Joseon Dynasty.
- 5. The imperial medical service included Western medicine doctors after the Sijongwon period,

Key words: Korean medical history, Taeuiwon, jeonuisa, Naeuiwon, Sijongwon

I. 서론

조선의 의학관청은 三醫司라 불리던 內醫院, 典醫監, 惠 民署의 체제가 세종대부터 갑오개혁 무렵까지 유지되었다. 그러다 1894년 갑오개혁 때 과거가 혁파되면서 고급 의학 관료의 등용문이었던 醫科가 폐지되었고, 전의감이 혁파되 는 급변기를 맞는다. 혜민서는 1892년에 이미 혁파되어 전 의감에 속하였다.

조선 왕실 의료를 담당하는 관청은 禮曹 산하의 정3품 衙門인 내의원이었다. 내의원은 세종조에 전의감에서 內藥 房이 분리되어 내의원으로 설치된 이후 직제 변화 등이 다 소 있었지만, 갑오개혁 때까지 큰 변화가 없이 업무와 체제가 유지되었다. 그러다가 내의원도 갑오개혁 다음 해(1895년) 관제 개혁을 거치면서 典醫司로 바뀌고 이후 太醫院으로 개칭되는 등의 변화가 있게 된다. 이는 일제강점기 때李王室의 典醫제도로 이어진다. 이러한 제도의 변화는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직제를 중심으로 정리되었다.1) 典醫에 대한 인물 연구도 일부나마 이루어진 바 있다.2)

그러나 갑오개혁 이후 왕실의3) 의료 관직 제도가 실제로 어떠하였는가에 대해 그동안 깊이 있게 연구되지 못했다. 또 이러한 관제 변화가 가지는 함의에 대해서도 논의가부족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갑오개혁 이후 왕실 의료 관제 전반에 대하여 충실하게 자료로서 고증하고 그 의미에 대하여 고찰하려 한다.

접수 • 2020년 10월 12일 수정 • 2020년 11월 02일 채택 • 2020년 10월 28일 교신저자 • 박훈평, 전남 나주시 동신대길 120-9 대정4판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의사학교실

Tel: 061-330-3525 E-mail: lillipute@dsu.ac.kr

¹⁾ 김두종. 『한국의학사』서울:탐구당. 1981:510-512. 신순식. 『한국한의학사 재정립 하』서울:한국한의학연구소. 1995:109-110. 김기욱, 김남일, 김도훈, 김용진, 김홍균, 김훈 외. 『한의학통사』고양:대성의학사. 2006:421-422. 선행연구는 김두종의 연구결과를 주로 따른다.

²⁾ 서병효와 김영훈에 대한 연구가 대표적이다. 김영훈에 대한 연구는 인물연구 보다 그가 남긴 자료에 대한 분석이 주를 이룬다. 선행 연구 조사에서 처방 분석위주의 결과물은 제외하였다. 박훈평. 「서병효 연구에 대한 예비적 고찰」.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20;33(3):49-61. 차용석. 「청강 김영훈과 수세현서」. 한국의사학회지. 2001;14(2):249-260. 차용석. 「청강진료부 자료현황 보고」. 대한한의학회지. 2004;25(2):119-126.

³⁾ 대한제국은 1897년 10월 이후에 성립되었으므로 1894-1897년 10월 사이의 기간은 대한제국기가 아니다. 시기마다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하여 야 하나 본고에서 총괄하여 지칭할 때는 왕실로 하였다.

Ⅱ. 본론

1. 內醫院(1894-1895년)

1) 관제 변화

1894년(고종 31) 6월4) 각 衙門의 관제를 개정할 때 즉 갑오개혁 때에 宮內府 산하의 독립 관서로 내의원은 유지되었다. 당시 전의감은 혁파되어 내의원에서 그 업무 일부를 포괄하게 되었다. 전의감의 혁파에 따라 기존에 전의감이 담당하는 의학 관료 양성(의사 면허) 등의 업무는 內務衙門의 衛生局에서 별도로 담당하였다.5) 이어서 같은 해 7월6) 軍國機務處에서 관제를 정하였는데 典醫監 업무까지포함하였음에도 이전의 내의원보다도 규모가 축소되었다(표 1).7)

표 1. 1894년 6월의 관제

관직명	이전 정원	변경 정원
提調	3	2
都提調	1	1 或 0
內醫	12	太醫 8
御醫	無定數	人酉 O
議藥同參	12	3 이하
內鍼醫	12	없음

1894년의 6월의 관제 개정은 관제운영과 관원 배치에 대한 상세 규정 없이 국왕 직속 성격의 기관들을 궁내부 산하에 복속시킨 것에 불과했다.8) 이후 관원 등의 규정에 대한 보완이 행해졌다. 예를 들어 같은 해 10월 내의원의 사무를 전문으로 하는 이가 없으므로 總務主事를 만들고 "태의 金興圭·尹豊楨·李禹善·玄東完 4명을 總務主事로 差下"하였다.9) 갑오개혁 이전의 내의원 행정직은 正, 僉正, 判官, 主簿, 直長, 奉事, 副奉事, 參奉으로 구분되었다.10) 1894년 6월의 관제 개혁에서는 별다른 구분 없이 모두 '太醫'로 통일되었다.

또 관제 개편에서는 내침의가 폐지되고, 어의와 내의의 구분이 없어졌으나, 실제에서는 이전 시기와 같은 체제가 유지되었다.

그러나 내의원의 사무에 있어서 국왕에 대한 정례적인 入診이 없어지고¹¹⁾ 관청의 규모가 축소되는 등 갑오개혁 이전 시기에 비하면 이 시기 내의원의 위상은 분명 약화가 되었다.

2) 의관 목록

아래는 갑오개혁 이후 내의원 시기에 당시 의관 목록이다(표 2).12)

이 시기의 왕실 의료를 담당한 의학 관료에 대하여 이전 시기에 사용되던 용어가 함께 쓰였다. 예를 들어 1894년 10월의 『승정원일기』 기사에는 기존에 사용되던 '鍼醫'와 '御醫'라는 용어가 사용된다.¹³) 그런데 尹豊楨의 사례를 통 해 御醫도 太醫라 부름이 확인된다.¹⁴) 그런데 尹豊楨과 金 性集의 사례를 보면 이 시기에 內醫에서 陞實된다.¹⁵)즉

^{4) 『}高宗實錄』 1894년(고종 31) 6월 28일 기사. 본고에서『朝鮮王朝實錄』원문과 번역문은 실록청(1413-1935). "朝鮮王朝實錄"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DB (2020.7.30.)를 활용하였다.

⁵⁾ 전염병 예방, 牛痘, 공중위생 등의 일이다. 김두종. op. cit. p. 495-496. 갑오개혁으로 왕실과 국가의 사무가 분리된 결과였다. 본고는 왕실의료 가 주제이므로 내부 위생국에 대한 논의는 다루지 않았다.

^{6)『}고종실록』1894년(고종 31) 7월 22일 기사. "內醫院掌調和御藥. 【典醫竝】提舉二員. 【一員宗正協辦中乘, 若大君, 王子君, 嫡王孫君, 宗正大臣中爲之, 以都提舉爲稱, 上輔國領宗正以下並稱提舉. 一員承宣中兼.】, 太醫八員, 議藥同參無過三員." 의약동참의 경우 태의원의 관직명인데 국사편찬 위원회의 DB에는 잘못되어있다. 김두종은 이를 바르게 해석하였다. 김두종. op. cit. p. 510.

⁷⁾ 박훈평 역주. 『역주 내의원식례』서울:퍼플. 2015:11-15. 『내의원식례』는 1810년경 저술된 내의원 관련 규정집이다. 내침의와 의약동참의도 광의의 어의이지만 여기서는 내의 중에 당상관 이상으로 가자된 경우나 동반직을 받았다가 다시 내의원으로 복속된 경우의 협의의 어의를 지칭한다.

⁸⁾ 서영희. 「1894-1904년의 정치체제 변동과 궁내부」. 한국사론. 1990;23:346-347.

^{9) 『}승정원일기』1894년 10월 4일 기사. 승정원(1623-1894). "承政院日記" 국사편찬위원회. 승정원일기 DB(2020.7.31.)

¹⁰⁾ 박훈평 역주. op. cit. p. 13.

^{11) 『}고종실록』 1897년 1월 20일 기사. "醫院之請診入侍, 乃在三年未行之餘."라 하여 3년 동안 없었다는 내용이 나온다.

¹²⁾ 관직은 1894년 갑오개혁 이후의 관직이다. ?는 軍職이라 하여 관직명이 나오지 않은 경우이다. 同參 全在結을 제외한 의관은 다음을 활용하였다. 박훈평. 『조선시대 의관총목록』. 대전:한국한의학연구원. 2018:31, 58, 74, 134, 274, 285, 298, 300, 310, 321, 329, 340, 357, 358, 370, 460, 464, 545, 579, 600.

^{13) 『}충정원일기』 1894년 10월 19일 기사. "鍼醫皮秉俊,移拜軍務衙門主事,御醫李命倫,移拜法務衙門主事,並依新式,減下御醫,李命倫代,金性集 陞差,何如?"

^{14) 『}승정원일기』1894년 7월 14일 기사를 보면 尹豊楨은 內醫에서 御醫로 陞實되었다. 그런데 그를 『승정원일기』1894년 10월 4일 기사에서는 太醫라 부른다.

^{15) 『}승정원일기』 1894년 7월 14일, 10월 19일 기사.

가스 레크 - 시호 레트 - 비시시 - 비레 : //mgp시 - 子處p

갑오개혁 이후에도 내의원 내에는 御醫와 內醫의 구분이 있었다. 皮秉俊의 사례는 계속 '鍼醫'라 부르고 있어 내침의 직임은 의약동참처럼 별개로 존재하였을 것이다.

표 2. 1894년의 의관 목록

관직	前歷
同參(?)16)	同參
御醫	內醫
御醫	御醫
太醫 總務主事	御醫
御醫	御醫
太醫 總務主事	御醫
同參(?)	同參
醫官	御醫
御醫	內醫
御醫(?)	御醫
御醫	內醫
太醫 總務主事	內醫
御醫	御醫
御醫	御醫
御醫	御醫
同參	同參
同參(?)	同參
御醫	御醫
鍼醫	鍼醫
太醫 總務主事	內醫
同參(?)	同參
	同參(?)16)

2. 典醫司(1895-1896년)

1) 관제 변화

1895년 4월 宮內府 관제가 반포되면서 내의원은 典醫司로 바뀌고 宮內府 侍從院의 산하 관청이 되었다.17) 당시의 궁내부 관제는 고종의 정치력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궁내부가 전체적으로 축소되었다.18) 1894년의 관제와 비교하여 관련 부서끼리 모아 "매우 정제된 모습"을 보인다.19)

전의사의 직임은 다음과 같다(표 3). 이전 내의원에 비해 전의사는 인력 면에 있어 규모가 다시 확대되었다. 행정업무를 위한 主事를 따로 두었는데 기존 4명에서 2명으로줄었다.

표 3. 1895년 4월의 관제

관직명	정원	비고
長	1	勅任
秘書中丞兼典醫	3 이하	奏任 或 待遇
兼典醫	無定數	大工 以 付週
典醫補	5 이하	判任
主事	2	判任

1895년 11월의 典醫司의 관제는 다음과 같다(표 4).20) 1895년 관제 변화에 따라 생긴 兼典醫의 경우 수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실제 13명이 임명되었다.21) 그러므로 11월의해당 정원(4명)은 정원이 준 것이다. 典醫補 또한 그 정원이 줄었다. 내의원의 명칭뿐만 아니라 관례로 사용되었던어의, 동참, 침의 등의 용어가 사용되지 않았다. 典醫司에서主事는 의학 관료로서의 경력이 없는 이들이 임명되는 사례로 보아 典醫補보다 더 낮은 내의원 입속자의 관직이다.

표 4. 1895년 11월의 관제

관직명	정원	비고
長	1	勅任
副長	4	奏任
兼典醫	4	奏任
典醫補	4	判任
主事	2	判任

그런데 1895년 11월의 관제에선 시종원의 산하였던 전의사가 내의원 시기처럼 궁내부 산하의 별도 아문으로 다시 독립하였다. 당시 3국 간섭으로 조성된 국제 정세에 따라 조선에서의 일본 세력이 약화가 되었고, 과거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²²⁾

¹⁶⁾ 의약동참이었던 高鑂, 李肯鉉, 鄭寅鎭은 내의원으로 환속되면서 軍職을 받는데 설명은 없지만 의약동참이었을 것이다.

^{17) 『}고종실록』1895년 4월 2일 기사. "典醫司: 聖候入診과 御藥調和를 掌홈. 長一人, 勅任; 祕書中丞兼典醫三人以下, 兼典醫無定數, 奏任或待遇; 典醫補五人以下, 主事二人, 判任."

¹⁸⁾ 홍문기. 「갑오개혁 이후 비서기관의 변천과 군주권」. 한국사론. 2006;52:276-277.

¹⁹⁾ 서영희. op. cit. p. 357-358.

^{20) 『}일성록』 1895년 11월 10일 기사. "典醫司掌聖候入診御藥調和置左開職員事○長─人勅任○協辦兼管理司務監督所屬官吏事副長四人奏任○参書 詹事 副詹事中兼典醫四人奏任 典醫補四人判任 主事三人判任." 규장각(1783-1910). "日省錄"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규장각 원문자료검색(2020.7.31.) 선행연구들에서는 1895년 11월의 관제 변화를 누락하였다.

²²⁾ 서영희. op. cit. p. 363.

그러나 이 시기 전의사는 여전히 국왕에 대한 정례적인 入診을 하지 못했고, 조선 후기만큼의 위상을 회복하지 못 했다. 용어에 있어서 조선 후기 내의원의 색채를 완전히 벗 어났다.

2) 의관 목록

아래는 전의사 시기 22명의 의관 목록이다(표 5).23) 이 시기에 오면 기존의 내의, 동참, 내침의의 구분이 없어지고 품계에 따라 겸전의, 전의보로 임명되었다. 전의사에서 主 事는 의학 관료로서의 경력이 없는 이들이 임명되었다.

표 5. 1895-1896년의 의관 목록

# 0. 1090 T 1090 T	!न नर्स नन	
이름	관직	前歷
高鑂	兼典醫24)	同參
金秉濟	兼典醫	同參
金堯璇	兼典醫25)	鍼醫
金興圭	典醫補	主事
朴準承	典醫補	同參
沈永錫	主事	_
尹龜楨	兼典醫	鍼醫
尹豊楨	兼典醫	主事
李肯鉉	兼典醫	同參
李能基	兼典醫	御醫
李禹善	主事	主事
李章爀	兼典醫	御醫
李在琫	兼典醫	御醫
李宗惇	典醫補	鍼醫
李忠淵	兼典醫	御醫
李漢宰	典醫補	_
李海昌	兼典醫	御醫
鄭寅鎭	兼典醫	同參
鄭楫	兼典醫	同參
蔡東根	典醫補	同參
玄東完	主事	主事
洪哲普	兼典醫	同參

3. 太醫院(1897-1906년)

1) 관제 변화

1897년(건양 2) 1월 典醫司는 太醫院으로 개칭되고 이전의 長과 副長을 都提調, 卿, 少卿으로 바꾸었다(표 6).26) '太醫'는 조선 시대에도 御醫를 달리 부르는 용어로서 사용이 되므로 이 개칭은 기존 명칭으로의 복원이다. 또 都提調, 卿, 少卿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提調가 3인이었던 갑오개혁이전의 내의원 제조 제도와 유사하다.27) 이러한 변화는 아관파천 이후 왕실 권위의 강화를 추구하던 상황과 관련된다.28) 그리고 겸직 대상으로 볼 때 기존의 長, 副長이나 都提調, 卿, 少卿은 의학으로 出身한 관료의 직임은 아니다.

표 6. 1897년 1월의 관제

관직명	비고	兼職
都提調	勅任	原任議政 或 宮內府大臣
卿	勅任	正2品 이상
少卿	奏任	秘書院丞 或 春坊

1903년(광무 7) 6월에 궁내부 관제가 개정되면서 태의원에 技師을 새로 두었다.29) 이때 기사로 太醫院主事였던玄東完이 임명되었다. 그는 의과, 내침의를 거친 의관이므로30) 즉 '기사'는 의관직이다. 兼典醫, 典醫補라는 관직명은최소한 1903년 12월경까지는 사용되었다.31) 이 시기 궁내부 관제 개정에서는 따로 설명이 없지만 典醫도 의관 직임으로 사용되었다. 1897년 9월 이후로 의학 관료의 典醫의임명 사례는 다수 있다.32)

또 국왕에 대한 정례적인 入診이 복원되었다.33) 당시 태의원에서 기록한 일지인 『태의원일기』가 규장각에 현존한다(그림 1).34)

²³⁾ 박훈평. op. cit. p. 31, 64, 90, 134, 178, 285, 298, 300, 340, 357, 358, 366, 382, 389, 391, 460, 466, 502, 579, 600.

^{24) 『}승정원일기』1895년 4월 29일 기사. "任典醫司兼典醫李能基·洪顯普·李章爀·李在琫·高鑂·李忠淵·李肯鉉·李海昌·尹龜楨·鄭楫·金秉濟·金堯濟·金堯璇·李 元雨." 기사 내용 중의 洪顯普는 洪哲普의 오기로 보인다. 洪顯普는 1815년생의 御醫로 1882년까지의 기사에만 등장하는데 생년으로 볼 때 1895년에 활동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 박훈평. op. cit. p. 601.

^{25) 『}승정원일기』 1895년 12월 11일 기사에서 "典醫"는 "兼典醫"의 오류이다.

^{26) 『}고종실록』1897년 1월 4일 기사. "典醫司以太醫院改稱, 長, 副長以都提調, 卿, 少卿改稱. 而都提調勅任(原任議政宮內府大臣中兼.), 卿勅任(正二品以上), 少卿奏任(秘書院丞春坊兼)."

²⁷⁾ 조선 시대의 내의원 제조는 대신이 겸하는 도제조, 정2품 이상이 겸하는 제조, 승지가 겸하는 부제조의 3인이었다.

²⁸⁾ 성균관의 경우도 기관의 운영에 복고적인 경향이 강해지고 졸업생 진로에 대한 법적인 보장이 이루어졌다. 성숙경. 「갑오개혁 이후 성균관의 근대적 재편」. 한국근현대사연구. 2006;39:126.

^{29) 『}고종실록』 1903년 6월 17일 기사. "太醫院技師一人 增置件"

^{30) 『}승정원일기』 1903년 5월 22일 기사. 박훈평. op. cit. p. 579.

^{31) 『}승정원일기』 1903년 12월 14일, 12월 20일 기사.

2020, VOL. 33, No. 2 https://doi.org/10.15521/jkmh.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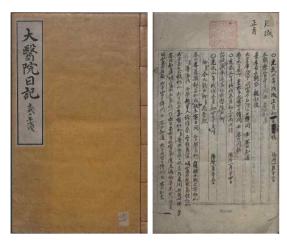


그림 1. 『태의원일기』(1898년) 표지와 본문

1905년(광무 9) 3월 궁내부 관제의 전면적인 개정이 있었다(표 7).35) 기존의 兼典醫, 典醫補가 典醫로 통일되었고,36) 기사는 製藥師長으로 바뀌게 된다. 『고종실록』의 해당 기사에는 製藥師로만 되어있으나 玄東完에 대한 임명기사는 製藥師長으로 되어있다(표 8).37) 의학 관료에 대하여奏任官만 11자리에, 主事 3자리로 총 14자리인 셈이다.

표 7. 1905년 3월의 관제

관직명	정원	비고
都提調	1	勅任
卿	1	勅任
副卿	1	秘書院丞 兼
典醫	10	奏任
製藥師(長)	1	奏任
主事	3	判任

2) 의관 목록

표 8. 1897-1906년의 의관 목록

이름	관직	前歷
金東錫	分主事	御醫
金堯璇	典醫補, 典醫	兼典醫
金昌有	兼典醫, 典醫	主事
金興圭	典醫補, 典醫	典醫補
朴準承	典醫	典醫補
裵碩鍾	兼典醫, 典醫補	委員
沈永錫	主事	_
尹龜楨	兼典醫	鍼醫
尹豊楨	典醫	主事
李康年	兼典醫	主事
李肯鉉	兼典醫	同參
李能基	兼典醫	御醫
李禹善	主事	主事
李鶴浩	典醫, 典醫補	主事
李漢宰	典醫補	_
李海昌	兼典醫	御醫
鄭寅鎭	典醫	同參
鄭楫	兼典醫	同參
蔡東根	典醫補, 典醫	同參
玄東完	主事	主事
洪哲普	典醫	同參

이상은 태의원 시기 21명의 의관 목록이다(표 8).38) 醫科가 폐지된지 10년이 넘어가면서 태의원 내에도 의과 출신이 아닌 이들이 신진으로 입속되었다. 通信司主事 출신인 金昌有, 廣濟院臨時委員 출신인 裵碩鍾, 軍部主事 출신인李鶴浩, 軍部主事 출신인 李康年 등이 그 예이다.

'典醫'를 '無典醫'를 지칭하는 용어로 생각할 수도 있고, 兼典醫와 典醫로 각각 언급하기도 하므로 별개의 직임일 수도 있다.39) 그러나 논자는 전자가 더 옳다고 추정한 다.40) 전의사의 태의원 개칭이 1897년 1월에 이루어졌으 므로 典醫 직임의 일상적인 사용도 대략 이 시기 이후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태의원의 위상이 높아지면 서 의학 관료의 위상도 높아졌던 결과로 보인다. 전의사 시

³²⁾ 예를 들어 『승정원일기』 1897년 9월 4일 기사. "太醫院典醫朴準承·洪哲普·鄭寅鎭·尹豊楨." 1903년 12월 20일 기사. "太醫院典醫補李鶴浩任太 醫院典醫."

^{33) 『}고종실록』 1897년 1월 20일 기사. "醫院之請診入侍, 乃在三年未行之餘."라 하여 3년 동안 없었다는 내용이 나온다.

³⁴⁾ 태의원(1898). "太醫院日記"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규장각 원문자료검색(2020.8.11.)

^{35) 『}고종실록』1905년 3월 4일 기사. "太醫院【掌診候,醫藥事務. 都提調一人, 卿一人, 勅任; 副卿一人, 祕書丞兼任; 典醫十人, 製藥師一人, 奏任; 主事三人, 判任.】"

³⁶⁾ 즉 '典醫'라 하여 의업에 종사하는 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 시기에 따라 다르다.

^{37) 『}승정원일기』 1905년 2월 20일 기사.

³⁸⁾ 박훈평. op. cit. p. 58, 90, 121, 134, 178, 202, 241, 277, 285, 298, 300, 340, 388, 389, 391, 460, 466, 502, 579, 600. 李康年은 『승정 원일기』 1902년 9월 27일 기사.

^{39) 『}승정원일기』1906년 12월 14일 기사. "太醫院兼典醫李海昌, 典醫金昌有, 各兒馬一匹賜給, 兼典醫慶鈺·張容駿加資. 製藥師長玄東完陞一級"

^{40) 『}승정원일기』1906년 12월 14일 기사를 제외하면 兼典醫와 典醫가 같이 언급된 사례는 없고, 典醫를 만들었다는 관제 개정에 대한 사료적인 근거도 없다.

기에는 秘書中丞兼典醫를 의사가 아닌 관료가 맡았기에 典 醫라 하여 모두 의사는 아니다. 그러나 태의원 시기부터는 典醫라면 모두 의사이다.

태의원 시기는 전의사 시절보다 황실을 담당하는 의학 관료의 위상이 높아져서 대한제국기 중에서는 가장 높은 위상의 시기였다. 이러한 위상 변화는 대한제국의 황권 강화에 따른 결과이다. 궁내부는 건양 연간(1897)부터 확대되기 시작하여 1899년 무렵부터는 의정부를 배제한 채 중요 정무를 담당하였는데,41) 궁내부 산하 태의원의 위상도이를 따른다.

4. 承寧府, 侍從院(1907-1910년)

1) 관제 변화

1907년(융희 1) 8월 고종의 퇴위 후 承寧府가 설치되는 데 1400-1409년 정종이 태상왕 태조를 위해 承寧府를 만들었던 전례를 따른 관서였다. 대한제국의 承寧府는 궁내부산하의 관청으로서 고종황제에 대한 물품, 음식, 회계, 위생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承寧府에서 의학 관료는 典醫 2원이 정원이었다. 승령부전의는 1907년 10월 26일 正三品 金瀅培와 正三品 洪哲普가 최초로 임명되었다.42) 승령부전의는 奏任官이 임명됨은 『大韓帝國官員履歷書』를 통해 확인된다.43) 시종원전의도 같은 주임관이 임명된 것을 보면 당시 전의는 모두 주임관이다.

1907년(융희 1) 11월 궁내부 관제가 개정되었다(표 9).44)

표 9. 1907년 11월의 관제

관직명	정원	비고
卿	1	勅任
副卿	1	勅任
侍從補	9	奏任 대우
典醫長	1	勅任
典醫	5	奏任
承寧府典醫	2	奏任
製藥師(長)	1	奏任
醫員	2	判任
主事	6	判任

提調에 해당되는 직임이 모두 혁파되었고 시종원경, 부경이 이를 대신하였다. 그러므로 순수한 의학 관료는 전의장, 전의, 전의, 제약사, 의원으로 11자리이다. 한시적인 승령부전의를 제외하면 9자리가 총원이다. 주사의 경우 시종원 전체 업무를 포괄하므로 의학 관료가 임명될 수도 있겠으나사료에서 그러한 사례는 없다.

대한제국의 최초이자 마지막 典醫長은 徐丙孝였다. 典醫 長은 典醫長官으로도 불리며 勅任官이 임명되는 자리로서 조선 시대의 正從 9품계로 보면 2품관 이상의 고위직이었 다. 의관 출신으로 實職의 2품관 이상이 된 경우는 조선 전 기의 경우 중종 때 혜민서제조를 지낸 河宗海 등과 같은 사례가 있지만⁴⁵⁾, 조선 중기와 후기에는 戶曹參判(종2품) 을 지낸 同參 洪旭浩가 유일한 사례이다.⁴⁶⁾ 同參의 경우 양반 가계의 적손도 있었고 이들의 신분은 동참 임명과 관 런 없이 유지되었으므로,⁴⁷⁾ 영남 남인계 집안의 적자였던 徐丙孝는 조선시대 同參의 전례와 유사하다.⁴⁸⁾ 그러나 의관 직에 칙임관을 임명함은 주목할 만하다. 조선 시대까지는 정3품 內醫院正이 의학 관료 직임으로는 가장 고위직이었다.

『大韓帝國官員履歷書』에서 1908년의 관원 명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醫員은 金東錫,李康年,製藥師는 徐廷鎬,典醫는 朴宗桓,洪在皥,朴準承,李海昌,小山善이다.承寧府의경우典醫는 金瀅培,洪哲普,鈴木謙之助이다.49) 沈永錫의

⁴¹⁾ 서영희. op. cit. p. 373.

^{42) 『}승정원일기』 1907년 10월 26일 기사. "正三品金瀅培, 正三品洪哲普任承寧府典醫."

^{43) 1908}년의 『大韓帝國官員履歷書』를 보면 洪哲普는 주임 2등관, 金瀅培는 주임 3등관이다. 국사편찬위원회(1972). "大韓帝國官員履歷書" 국사편 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2020.8.10.)

^{44) 『}순종실록』1907년 11월 27일 기사. "典醫長一人, 勅任; 典醫五人, 製藥師一人, 奏任; 醫員二人, 主事六人, 判任." 승령부 전의를 제외하면 모두 시종원 소속 관원이다.

⁴⁵⁾ 박훈평. op. cit. p. 351.

⁴⁶⁾ 박훈평. op. cit. p. 597. 實職이 아닌 贈職이나 資品의 경우는 1품관의 경우도 종종 있다.

⁴⁷⁾ 양반가의 적손들이 仕路로 선택할 정도로 동참직에 대한 신분적 편견은 약하였다. 박훈평. 「조선후기 의약동참과 내침의 신분 연구」. 장서각. 2018:39:208-231.

⁴⁸⁾ 박훈평. 「서병효 연구에 대한 예비적 고찰」.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20;33(3):50.

^{49) 1908}년의 『大韓帝國官員履歷書』를 보면 洪哲普는 주임 2등관, 金瀅培는 주임 3등관이다. 국사편찬위원회(1972). "大韓帝國官員履歷書" 국사편 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2020.8.10.)

『大韓帝國官員履歷書』를 보면 1907년에 '太醫院書記郎'을 지냈다.50) 書記郎은 1907년 대한제국 각 관아에 있었던 판 임관 직으로 1908년 1월 主事로 개정되었다.51) 즉 1906년 이전의 主事, 1907년의 書記郎, 1908년 이후의 主事는 모 두 동일한 직임이다.

이 시기 承寧府와 侍從院으로 황실 의료 담당이 나뉘기 는 했으나 承寧府는 이전 황제가 살아있을 때의 한시적인 과서이다.

고종의 강제적 퇴위로 순종이 즉위하였기에 대한제국의 황권은 약화되었고 별도 관청이었던 태의원도 궁내부 시종 원 산하의 부서로 다시 지위가 하락하였다. 규모가 축소되 면서 대한제국기 중에서는 가장 낮은 위상의 시기로 별도 의 관서도 아니었다.52)

2) 의관 목록

아래는 시종원 시기 18명의 한의 의관 목록이다(표 10, 11).53) 의학 관료의 구성에 있어서 이전 시기와 가장 큰 차이는 서양의학 전공자가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大韓 帝國官員履歷書』를 통해 1908년의 경우를 보면 총 11명 중에 製藥師 徐廷鎬, 典醫 朴宗桓, 小山善, 承寧府典醫 鈴木 謙之助 4명이 양의사이다. 태의원 시기까지는 황실 의료 담 당은 한의 일변이었다. 알렌 이후로 서양의학이 의학 교육 과 대민 치료에 이용되었음에도54) 황실 의료 관제에 반영 되지 않은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55)

표 10. 1907-1910년의 한의 의관 목록

이름	관직	前歷
金東錫	醫員	分主事, 御醫
朴宗桓	典醫	_
朴準承	典醫	典醫
徐丙孝	典醫長	教官
沈永錫	書記郎(主事)	主事
尹豊楨	典醫	典醫
李康年	醫員	兼典醫
李海昌	典醫	典醫
鄭寅鎭	典醫	典醫
蔡東根	典醫	典醫補
玄東完	製藥師	技師
洪哲普	承寧府典醫	典醫

典醫 가운데 양의의 포함(표 11)56)은 서양의학이 대한 제국의 공적인 황실 의료 체계 내에서 강제적으로 이식되 었음을 시사한다. 이는 통감부(1906-1910) 체제 아래에서 대한제국의 관료로 친일적 인사나 일본인 등이 다수 포함 되는 상황과도 일부 관련이 있다. 佐佐木四方志(사사키 요 모시)는 통감부 警務顧問의 초빙으로 1906년부터 광제원에 서 근무하게 되는데, 광제원 초창기부터 참여한 한의 3인과 종두의 2인을 구조조정하고 일본인 의사를 참여시켰다.57)

표 11. 1907-1910년의 양의 의관 목록

이름	관직	前歷
鈴木謙之助	承寧府典醫	_
朴宗桓	典醫	_
徐廷鎬	製藥師	軍醫補
小山善	典醫	_
安商浩	典醫	_
佐佐木四方志	典醫	技師(洋醫)

⁵⁰⁾ 국사편찬위원회(1972). "大韓帝國官員履歷書"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2020.8.10.)

^{51) 『}승정원일기』 1908년 1월 6일 기사. "書記郞을 主事로 改正홈"

^{52) 1910}년 8월 한일병탄 이후 대한제국이 사라지면서 황실은 이왕실로 격하되었고 대한제국 궁내부 또한 일본 궁내청 산하의 이왕직으로 격하되 었다. 황실 의료 관직들은 일시 혁파되었다가 같은 해 12월 이왕직 산하에 典醫와 典醫補 직제가 마련되었고, 1911년 2월 典醫 6인이 실제 임명되었다. 『순종실록』 1910년 12월 30일, 1911년 2월 1일 기사.

⁵³⁾ op. cit. p. 58, 178, 242, 285, 391, 460, 502, 579, 600. 徐廷鎬는『승정원일기』1904년 11월 3일, 1907년 10월 26일 기사. 李康年은『승정 원일기』 1902년 9월 27일 기사.

⁵⁴⁾ 대한제국은 부국강병의 일환으로 서양의학을 수용하려 했다. 1899년 3월 반포된 의학교 관제에서는 동서의학 병존이 추구되었고, 7월 반포된 의학교 규칙에서는 서양의학에 대한 강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의학교에서의 일본인 교관 임용은 일본의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박윤재. 「대한제국과 통감부의 의학체계 구상과 전개」. 동방학지. 2007;139:80-85.

⁵⁵⁾ 고종의 한의에 대한 신뢰와 동시에 일본인 의사들을 믿지 못했던 것도 원인일 것이다.

⁵⁶⁾ 국사편찬위원회(1972). "大韓帝國官員履歷書"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2020.8.10.). 『승정원일기』1908년 1월 14일 기사. "大韓 醫院技師佐佐木四方志兼任侍從院典醫." 1910년 7월 21일 기사. "安商浩任侍從院典醫."

⁵⁷⁾ 박윤재. op. cit. p. 92-93. 이러한 전력의 佐佐木四方志가 시종원의 전의가 되면서 초래했을 양의 일변의 추구는 황실의료에서 양의의 강화로 이어진다.

Ⅲ. 결론

본고를 통하여 갑오개혁 이후 조선의 왕실 의료 관료제도가 실제로 어떠했는가 관찬 자료로서 고증하였다. 또한 관제 변화와 당시 의학 관료를 통하여 그 관제에 내포된 의미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갑오개혁 이후 조선의 왕실 의료는 크게 내의원(1894-1895), 전의사(1895-1896), 태의원(1897-1906), 시종원(1907-1910) 시기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새롭게 알았다.

첫째, 왕실 의료 관청의 위상은 왕실의 위상과 관련이 있다. 대한제국 시종원 시기가 가장 낮았고, 태의원 시기가 가장 높았다.

둘째, 전의사 시기부터 전통적인 조선시대 왕실 관제 직임들이 사용되지 않았다. 내의원, 의약동참, 내침의 등이 그예이다.

셋째, '典醫'가 왕실 의료를 담당하는 관료 의사와 동의 어가 된 것은 태의원 시기 이후이다. 그 이전의 典醫는 의 사가 아닌 왕실 의료를 담당하는 관청의 고위직 관료도 포 함하는 용어였다.

넷째, 典醫長은 의학 관료직으로는 조선 시대 이후로 가장 높았다. 2품관 이상의 지위인 칙임관이 임명되었다. 조선 시대에는 3품관이 가장 고위직이었다.

다섯째, 황실 의료에 있어 서양의들이 포함된 것은 시종 원 시기 이후이다. 그 이전까지는 한의 일변이었다. 이는 서양의학이 대한제국의 공적인 황실 의료 체계 내에서 강 제적으로 이식되었음을 시사한다. 한편 통감부 체제 아래에서 일본의 조선에 대한 영향력 증대라는 상황과도 관련된다.

참고문헌

- 1. 김기욱, 김남일, 김도훈, 김용진, 김홍균, 김훈 외. 『한의 학통사』. 고양:대성의학사. 2006:421-422.
- 2. 김두종. 『한국의학사』. 서울:탐구당. 1981:495-512.
- 3. 김정선, 황상익. 「1898년도 조선왕실의 의료 연구」. 의 사학. 2004;13(2):219-232.
- 4. 박윤재. 「대한제국과 통감부의 의학체계 구상과 전개」. 동방학지. 2007;139:77-104.
- 5. 박훈평 역주. 『역주 내의원식례』서울:퍼플. 2015:11-15.

- 6. 박훈평. 『조선시대 의관총목록』 대전:한국한의학연구원. 2018:11-606.
- 7. 박훈평. 「조선후기 의약동참과 내침의 신분 연구」. 장서 각. 2018;39:208-234.
- 8. 박훈평. 「서병효 연구에 대한 예비적 고찰」. 대한한의학 원전학회지. 2020;33(3):49-61.
- 9. 서영희. 「1894-1904년의 정치체제 변동과 궁내부」. 한 국사론. 1990;23:327-396.
- 10. 성숙경. 「갑오개혁 이후 성균관의 근대적 재편」. 한국 근현대사연구. 2006;39:123-163.
- 11. 신순식. 『한국한의학사 재정립 하』. 서울:한국한의학연 구소. 1995:109-110.
- 12. 차웅석. 「청강 김영훈과 수세현서」. 한국의사학회지. 2001;14(2):249-260.
- 13. 차웅석. 「청강진료부 자료현황 보고」. 대한한의학회지. 2004;25(2):119-126.
- 14. 홍문기. 「갑오개혁 이후 비서기관의 변천과 군주권」. 한국사론. 2006;52:251-294.
- 15. 국사편찬위원회(1972). "大韓帝國官員履歷書" 국사편찬 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2020.8.10.)
- 16. 규장각(1783-1910). "日省錄"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규 장각 원문자료검색(2020.7.31.)
- 17. 승정원(1623-1894). "承政院日記" 국사편찬위원회. 승 정원일기 DB(2020.7.31.)
- 18. 실록청(1413-1935). "朝鮮王朝實錄"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DB (2020.7.30.)
- 19. 태의원(1898). "太醫院日記"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규장 각 원문자료검색(2020.8.11.)